

화순군민익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8. 9. 4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98. 9. 5

다. 상정일자 : 98. 9. 14

(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

나. 개정사유

- 현재 수상 예정일 30일전 까지로 되어 있어 추천자에 대한 공적 확인 등의 기간이 촉박하여 충분한 심의가 어렵기 때문에 60일 전까지로 개정하여 심사 일정을 확대키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군민의 상 수상 대상자 추천을 "30일전" 까지를 "60일전" 까지로 개정 - 제44조(수상 후보자의 추천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철저한 공적 심의를 위하여 심사 기간을 60일로 연장하기 위한 조례로,
- 군민의 상 수상 일자가 11월 1일 「군민의 날」 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상 예정일 "60일전"까지로 하면 언제까지 추진하여야 하는지 직감할 수 없음 (실제는 9. 1까지임)
- 따라서 연말인 8월 31일, 또는 9월 1일까지 등으로 정확한 일자를 명기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'생략'

5. 토론요지

'생략'

6. 심사결과

'원안가결'

첨 부 :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민의회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민의회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"30일전"을 "60일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<p>제4조 (수상후보자의 추천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추천을 군의회 의장,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이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예정일 <u>30일전까지</u>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 (수상후보자의 추천) - <u>60일전</u> - - - - - - - - ,</p>